

개발공학연구기금 관리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독지가 심영수와 김성규(이하 “출연자”라 한다)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스템경영공학과 개발공학연구팀의 연구 의욕을 진작시킴과 나아가 미개척 첨단분야인 개발공학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출연한 재원으로 설치한 연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개발공학연구기금(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개발기금은 출연자가 기부한 3억원을 그 원금으로 하며 이 개발기금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30%이상을 원금에 편입하여 계속 증식되도록 한다.

제4조(관리위원회) 개발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시스템경영공학과 개발공학연구팀의 책임연구자(권철신 교수),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 및 출연자가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개발기금 및 그 관련업무를 통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처리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내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

제7조(개발기금의 관리) ① 위원회는 개발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되,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2. 기타 방법에 의한 개발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
- ② 개발기금의 관리는 본교 총무처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개발공학연구비 지급) ① 개발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에의 편입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개발공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 수혜대상은 본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권철신 교수가 지도하는 개발공학연구팀으로 한다.

제9조(소관부서) ①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장부 및 기타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사무 처리도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10조(목적의 변경)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연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감사) 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